

부천고용복지+센터 6층, 김포고용복지+센터 3·4층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부천고용복지+센터 6층 사무공간 및 김포고용복지+센터 3·4층 복도 및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3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시청장

-
1. 행정예고내용: 부천고용복지+센터 6층 사무공간 및 김포고용복지+센터 3·4층 복도 및 사무공간 내 CCTV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
 2. 설치목적: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,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 3. 관련근거
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 4. 공고기간: 2026. 7. 3.(금) ~ 7. 23.(목)(21일간)
 5. 공고방법: 부천고용노동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/bucheon>)
부천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/bucheon>)
김포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/gimpo>)

6. 설치장소

연번	설치장소(예정)	설치	비고
1	부천고용복지+센터 6층 사무공간 내	2대	
2	김포고용복지+센터 3층 복도	1대	
3	김포고용복지+센터 4층 복도	1대	
4	김포고용복지+센터 4층 사무공간 내	2대	

7. 의견제출

부천고용복지+센터 6층 사무공간 및 김포고용복지+센터 3·4층 복도 및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. 7. 23.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: 2026. 7. 3. ~ 2026. 7. 23. (21일간)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나. 제출방법: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AX 0503-8803-0147)

다. 기재내용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주소,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라. 제출장소: 부천시 석천로 207, 2층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부천시청 지역협력과 안윤희(☎ 032-714-8718)

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

